운력으로 세운 청빈의 계율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② 율장과 보청법에 나타난 노동

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 선사–



율장에서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선종의 발전을 통해 수행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운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사진은 부산 흥법사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김장 운력. 현대불교 자료사진

자급자족 위해 노동과 수행 병행한 선종

지난해 11월 해인사에서 겨울 한 철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한 김장 운력(運力) 과정이 EBS TV를 통해 방영됐다. 불가에서 운력은 어느덧 승가의 전통적인 행사와 문화로 자리 잡았고, 여러 방송 매체에서는 수행과 운력을 함께 하는 출가자의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운력과 일반적인 노동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혼자가 아니라 사찰 대중이 함께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어른 스님들은 "대중이 운력을 하면 송장도 벌떡 일어난다", "대중 운력에는 부지깽이도 따라 나온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는 운력이 수행자라면 응당 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파를 형성해 화엄종, 천태종, 율종 등이 생겨났다. 이들 종파 중 비교적 가장 늦은 시기에 나온 것이 선종(禪宗)이다. 이미 성립된 다른 종파에 비해 선종은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자급자족을 위한 노동과 수행을 병행해야 했다.

선종이 독립된 종파를 이루기 전에는 율종 사찰에서 함께 생활했다. 율종 사찰에서 생활하던 선사들은 율장의 현실적 실천에 부담을 느껴 독립해 선종을 일으켰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율장을 근본으로 하는 율종에서는 노동을 엄격하게 금하기 때문이다.

율종에서 독립한 선종은 모든 대중이 평등하게 작업하는 보청법(普請法)을 보편화하고, 생활 규범과 의식 절차 등 실천 가능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해 청규(淸規)를 만들었다. 또한 보청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동과 선을 하나의 수행으로 보게 됐고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는 불교 교단으로 자리 잡았다.

폐불 사건에도 운력으로 살아남아

선종이 자급자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당나라에서 안녹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대규모 전란인 '안사의 난'이 755년 12월부터 763년까지 일어났다. 당시 불교의 상황 역시 매우 좋지 않았는데,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승려 자격증을 판매하는 도첩 행위로 승가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일로 불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선종은 자정 노력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급자족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력은 자연스럽게 일상화됐고 승가 구성원들 또한 운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 같은 생활방식은 후대에 일어난 폐불 사건 속에서 선종이 살아남는 결과를 낳게 된다. 9세기 말 당나라 무종 때 일어난 '회창폐불(845년)'로 4600여 개 사찰이 폐사되고 승려 26만여 명이 환속하는데, 보청법과 청규를 기반으로 자급자족하던 선종은 희생을 피할 수 있었다.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사원 경제의 확장은 도첩제와 더불어 회창폐불의 원인 중 하나였는데, 선종은 자급자족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승가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보청법과 '노동 금지' 율장의 차이

백장 선사의 일화를 통해서도 운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겨볼 수 있다. 백장 선사는 매일 운력 시간이 되면 다른 대중들보다 먼저 나와 일했다.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주지가 하루는 노동에 쓰이는 연장을 감추고 휴식하기를 청했다.

그러자 선사는 "내가 아무런 덕이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롭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날 공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백장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굴지계 인연담에 나타난 노동 금지
생명 보호 위한 경작 제한 의미 담겨
검소·청빈 생활 영위해야 하는 승가
운력 통해 자급자족 청정한 모습 보여

이때 제정된 것이 농선병중(農禪幷重)인 보청법이다. 하지만 선종의 보청법은 앞서 언급했듯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율장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다.



원주의 주관 아래 나물을 말리는 스님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율장에 의하면 비구가 노동이나 땅을 파는 행위를 하면 바일제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붓다가 이러한 율 조문을 제정한 까닭은 승가 구성원의 생활방식이 유행 생활에서 정주 생활로 변화한 까닭이다.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녹야원의 다섯 비구를 제도한 이후에 성립된 승가는 주거지 없이 유행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다 빔비사라왕에게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를 기증받은 후부터 정주 생활을 하게 된다. 정주 생활로 비구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나무를 베는 등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금하는 다음과 같은 율 조문이 제정된다.

Yo pana bhikkhu paṭhaviṃ khaṇeyya vā khaṇāpeyya vā pācittiyaṃ.
若比丘 自手掘地 若教人掘者 波逸提.
어떠한 비구라도 땅을 파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 땅을 파게 하면 바일제이다.

생명 보호 위해 노동 금지

붓다가 율 조문을 제정하면서까지 노동을 금지한 까닭은 바일제 10조 굴지계의 인연담을 통해 알 수 있다. 비구들이 정사를 수리하면서 스스로 땅을 파고 다른 이에게도 땅을 파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석가의 제자들이 땅을 파고, 남에게도 땅을 파게 하는가? 석가의 제자들은 일근(一根)의 생명을 해친다"라고 비난했기에 이러한 조문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문에서는 설명되지 않지만 율장의 부가적인 조문 해석에 의하면, 붓다는 땅을 생지와 불생지로 구분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생지는 식물의 성장에 적당한 토지인데, 이 토지를 호미나 가래로 자르거나 망치로 때리거나 낫으로 찌르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찔러도 바일제가 되며, 이러한 토지에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고 한다.

즉, 식물의 성장이 가능한 토지를 경작할 때 생지에 살던 생명체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이다.

바일제를 범한 비구는 두 명 내지 세 명의 청정한 비구에게 참회하면 청정한 비구로 회복할 수 있다. 참회로 청정해진 비구는 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수행 전념을 위한 율장 조문

비구를 대신해 사원에서 노동을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정인(淨人)'이라 한다. 정인에게 일을 시킬 때에도 비구는 정어(淨語)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를 파라"는 말은 계를 범하는 말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고, "이것을 알라. 이것을 주어라. 이것을 움직이고, 이것을 원한다"와 같은 정어로 작업을 요청해야 한다. 율장에 나타나는 정법은 율의 조문 변경이 어려운 당시 현실에서 생겨난 최선책이었을 것이다.

붓다는 비구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죽인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노동하기보다는 수행에 매진하기를 바라며 조문을 제정했을 것이다. 이 조문이 없었다면 비구들은 농사를 짓거나 땅을 개간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일을 했을 것이다. 또한 생명을 사고팔거나 노역을 하는 등 이익을 위해 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세속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세속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자로서의 믿음과 공경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비록 율장에서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선종의 발전을 통해 수행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운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생명 중시의 불교 정신은 지키되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승가는 운력을 통해 대중들에게 청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재가자들은 그로 인해 운력의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